

충청북도교육연구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
심사보고

1996. 12.

교육시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6년 11월 12일

○ 회부일자 : 1996년 11월 12일

다. 상정일자 : 1996년 12월 18일

제132회 충청북도정기회 제7차 교육시회위원회 심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초등교육국장 조성근)

가. 제안이유

충청북도 교육연구원 하부조직에 "교육평가부"를 "교육자료부"로 설치하고
이에 따른 부별 사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교육연구원의 설치 목적중 "교육평가 등을 실시함으로써"를 "교육자료개발 등을 실시함으로써"로 함.
- 교육연구원 하부조직에 "교육평가부"를 "교육자료부"로 함.
- "교육평가 도구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"을 조사연구부에서 함.
- 지도보급부의 업무에서 "시청각 재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"을 삭제하고,
"연구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"을 "연구·실험·시범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"
으로 함.
- 진로교육부 업무에서 "진로교육 연구·시범·실험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"을
삭제함.

3.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김영만)

충청북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,

본 조례안은

고수공학매체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한 지원·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0조4항 및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8. 개정조례안 : 별첨

9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